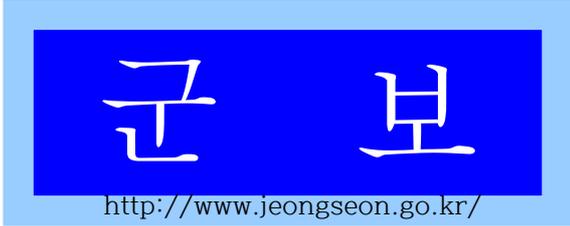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6호 2020. 7. 29. (수)

##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166호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0-167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5
- 정선군 고시 제2020-17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7
- 정선군 고시 제2020-183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10
- 정선군 고시 제2020-184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 : 중로3-A호선) 사업시행자 지  
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13
- 정선군 고시 제2020-187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모평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  
가 고시.....15

##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853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실시계획인가 공람 · 공고17

- 정선군 공고 제2020-855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 완료 공고.....19
- 정선군 공고 제2020-876호 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0
- 정선군 공고 제2020-87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28
- 정선군 공고 제2020-878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29
- 정선군 공고 제2020-88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38
- 정선군 공고 제2020-894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39
- 정선군 공고 제2020-895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52
- 정선군 공고 제2020-905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79
- 정선군 공고 제2020-905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108
- 정선군 공고 제2020-906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 공람 · 공고 .....12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166호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증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남면 광덕리 36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2) 명 칭 : 정선(남면)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금회시행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남면 폐기물처리시설	A=169,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재활용시설 224.10㎡(지상1층)</li> <li>■ 창고 56.00㎡(지상1층)</li> </ul>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환경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2) 준공예정일 :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남면 광덕리	365	잡	35,453	280.1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필지		35,453	280.1					

정선군 고시 제2020-167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24-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 2) 명 칭 : 정선(신동)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금회시행	
유원지	조동 유원지	A=1,112,394㎡	■ 체육시설 35.1㎡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신동읍)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1길 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신동읍 조동리	224-1	채	2,193	35.1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필지		2,193	35.1					

정선군 고시 제2020-17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7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임계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중심 공간에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를 위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92일원

다. 면 적 : 2,441㎡(증 107㎡)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제3공원	어린이 공원	임계면 송계리 692 일원	2,334	증)107	2,441	강원도고시 제112호 (1987.09.09)	

2)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제3공원	- 어린이공원 면적증가 - 면적:2,441㎡ (107㎡ 증가)	- 지적 면적 오차에 따른 변경으로 면적 증가

3)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결정면적					비 고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334.0	증)107	2,441.0	100.0	100.0	
세부 시설	소계	1,398.0	감)15	1,383.0	59.9	56.5	
	편익시설	108.0	감)90	18.0	4.6	0.7	
	유희시설	462.0	감)140	322.0	19.8	13.2	
	휴양시설	112.0	감)112	-	4.8	-	
	조경시설	152.0	감)152	-	6.5	-	
	운동시설	-	증)150	150.0	-	6.1	
	도로 및 광장	564.0	증)329	893.0	24.2	36.5	
녹지 및 기타		936.0	증)122	1,058.0	40.1	43.5	

4) 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기 정						변 경						비 고
	도면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도면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규모수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34.0		-	-	계		2,441.0	27	-	-	
편익 시설	소 계		108.0		-	-	소 계		18.0	1	-	-	
		화장실	55.0		-	-	가	화장실	18.0		-	-	
		휴게소	53.0		-	-	-	-	-	-	-	-	
유희 시설	소 계		462.0		-	-	소 계		322.0	9	-	-	
		놀이터	372.0		-	-	나	어린이 놀이터	283.0		-	-	
					-	-	①	그네	-	1	-	-	
					-	-	②	시소	-	2	-	-	
					-	-	③	조합 놀이대	-	1	-	-	
					-	-	④	막구조 파고라	-	1	-	-	
		운동기구	90.0		-	-	다	유아 놀이터	39.0		-	-	
					-	-	⑤	유아놀이 기구-1	-	1	-	-	
					-	-	⑥	유아놀이 기구-2	-	1	-	-	
					-	-	⑦	유아놀이 기구-3	-	1	-	-	
				-	-	⑧	유아놀이 기구-4	-	1	-	-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도면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건축면적(m <sup>2</sup> )		도면번호	시설명	부지면적(m <sup>2</sup> )	규모수량		건축면적(m <sup>2</sup> )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소 계		112.0		-	-	소 계		-	-	-	-	
		파고라1	57.0		-	-	-	-	-	-	-	-	
		파고라2	55.0		-	-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52.0		-	-	소 계		-	-	-	-	
		분수대	148.0		-	-	-	-	-	-	-	-	
		음수대	4.0		-	-	-	-	-	-	-	-	
운동 시설	소 계		462.0		-	-	소 계		150.0	6	-	-	
		운동시설	462.0		-	-	라	운동공간	150.0		-	-	
					-	-	⑨	운동기구-1	-	1	-	-	
					-	-	⑩	운동기구-2	-	1	-	-	
					-	-	⑪	운동기구-3	-	1	-	-	
					-	-	⑫	운동기구-4	-	1	-	-	
					-	-	⑬	운동기구-5	-	1	-	-	
도로 및 광장	소 계		564.0		-	-	소 계		893.0	12	-	-	
		광장	564.0		-	-	마	광장	893.0		-	-	
							⑭	등의자	-	11	-	-	
							⑮	사과 조형물	-	1	-	-	
녹지	소 계		936.0		-	-	소 계		1,058.0		-	-	
		녹지	936.0		-	-	-	-	1,058.0		-	-	

바.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20-183호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03-62호(2003. 6. 1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 사업
- 2) 명 칭 : 정선(여량) 군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m <sup>2</sup> )	금회시행	
공간시설	유원지	83,4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우라지 복합전시관 A=2,499.48m<sup>2</sup> - 건축 연면적 595m<sup>2</sup>)</li> <li>■ 아리랑 전시관 A=971m<sup>2</sup> - 건축 연면적 590m<sup>2</sup>)</li> </ul>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문화관광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토지조서(아우라지 복합전시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여량면 여량리	217-1	답	1,495	1,270.37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여량면 여량리	202-2	답	506	166.27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여량면 여량리	202-1	답	621	209.21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여량면 여량리	241-1	전	291	7.19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여량면 여량리	200-2	답	26	22.24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여량면 여량리	216	답	717	5.61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여량면 여량리	241-2	전	602	128.60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여량면 여량리	200-1	답	2,096	357.96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여량면 여량리	218	전	1,871	91.00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여량면 여량리	216-1	도로	229	33.83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여량면 여량리	242-2	전	818	207.2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1필지		9,272	2,499.48					

## ◎ 토지조서(아리랑 전시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여량면 여량리	167-1	답	2,310	208.94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여량면 여량리	184-2	전	2,160	762.06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2필지		4,470	971					

정선군 고시 제2020-184호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 : 중로3-A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19-1225(2019. 11. 20)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중로3-A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사업
- 2) 명 칭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도로:중로 3-A)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연장·폭원	기시행	금회시행	
도로	중로 3-A	L=400m, B=12~15m	-	L=400m, B=12~15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성암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 양순모
- 2) 주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로39, 1층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임	32,773	5,207	충북충주시 사직로39 1층	성암산업개 발주식회사	-	-	-	중로3-A
계		1필지		32,773	5,207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산153-5	임	32,773	5,207	충북충주시 사직로39 1층	성암산업개 발주식회사	-	-	-	중로3-A
계		1필지		32,773	5,207						

정선군 고시 제2020-187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모평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모평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모평문화공원) 조성
- 2) 명 칭 :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모평문화공원) 조성사업(변경)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규모	금회 시행	
공원	모평문화공원	A=119,830㎡	■ 모평문화공원 조성(변경) A=25,025㎡ - 휴양시설 40㎡      - 교양시설 1,839㎡ - 편익시설 226㎡    - 관리시설 4,658㎡ - 조경시설 813㎡    - 녹지시설 17,449㎡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산림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정선읍 광하리	13	임	2,906	2,238	봉양3길 21	정선군	-	-	-
2	정선읍 광하리	13-1	임	555	555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정선읍 광하리	16	공	63,538	8,855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정선읍 광하리	16-3	공	4,099	3,930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정선읍 광하리	16-4	공	918	918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정선읍 광하리	16-6	공	8,882	7,557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정선읍 광하리	16-7	공	972	972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7필지		81,870	25,025					

#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853호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정선군 고시 제2020-146호(2020.6.26.)로 최초 결정된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18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 2) 명 칭 : 정선(사북) 군계획시설(광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m <sup>2</sup> )	금회시행	
광장	경관광장	781	■ 경관광장 781m <sup>2</sup>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경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7. 17~2020. 7. 31.)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 경제과 (☎033-560-2006)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아우라지 복합전시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사북읍 사북리	366-59	대	387	42		정선군	-	-	-
2	사북읍 사북리	366-168	도	1,782	475		정선군	-	-	-
3	사북읍 사북리	452	천	251,718	228		국(건설부)	-	-	-
4	사북읍 사북리	452-5	대	162	36		정선군	-	-	-
계		4필지		254,049	781					

정선군 공고 제2020-855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공사 완료 공고

정선(정선) 군계획시설(공공청사)의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정 선 군 수

- 1.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1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
  - 나. 명 칭 : 정선경찰서 청사 신축사업
- 3. 사업의 면적
  - 가. 부지면적 : 8,739㎡
  - 나. 건축면적 : 2,163.40㎡(연면적 6,926.13㎡)
  - 다. 층 수 : 지상4층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 가. 성 명 : 강원지방경찰청
  -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5. 사업기간
  -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 공 일 : 2020. 3. 27.

정선군 공고 제2020-876호

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일상생활에서 군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과 그 실행체계 구축이 필요함
- 나. 헌법상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자체는 군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보장할 의무가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안 제7조)
- 마. 인권전담 부서 설치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사항(안 제8조)
- 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9조 내지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7. 20 ~ 2019. 8. 9.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232), 팩스(033-560-2590)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는 사람, 군에서 사업을 하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군의 인권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5.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두거나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계되는 사람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인권업무 소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제14조(위원회 의견 청취) ①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 계 법 령

##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87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2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263-11번지 일원
3.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4.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연구시설) 결정(변경)(안) 도 : 게재 생략 (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신동읍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14일(2020. 7. 22 ~ 8. 06)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신동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878호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 나. 재난상황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과 재난부서 간 협력 체계 마련

2.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구성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단장의 임무(안 제5조)
- 라.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마.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 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7. 22 ~ 2019. 8. 1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행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232), 팩스(033-560-2590)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정선군수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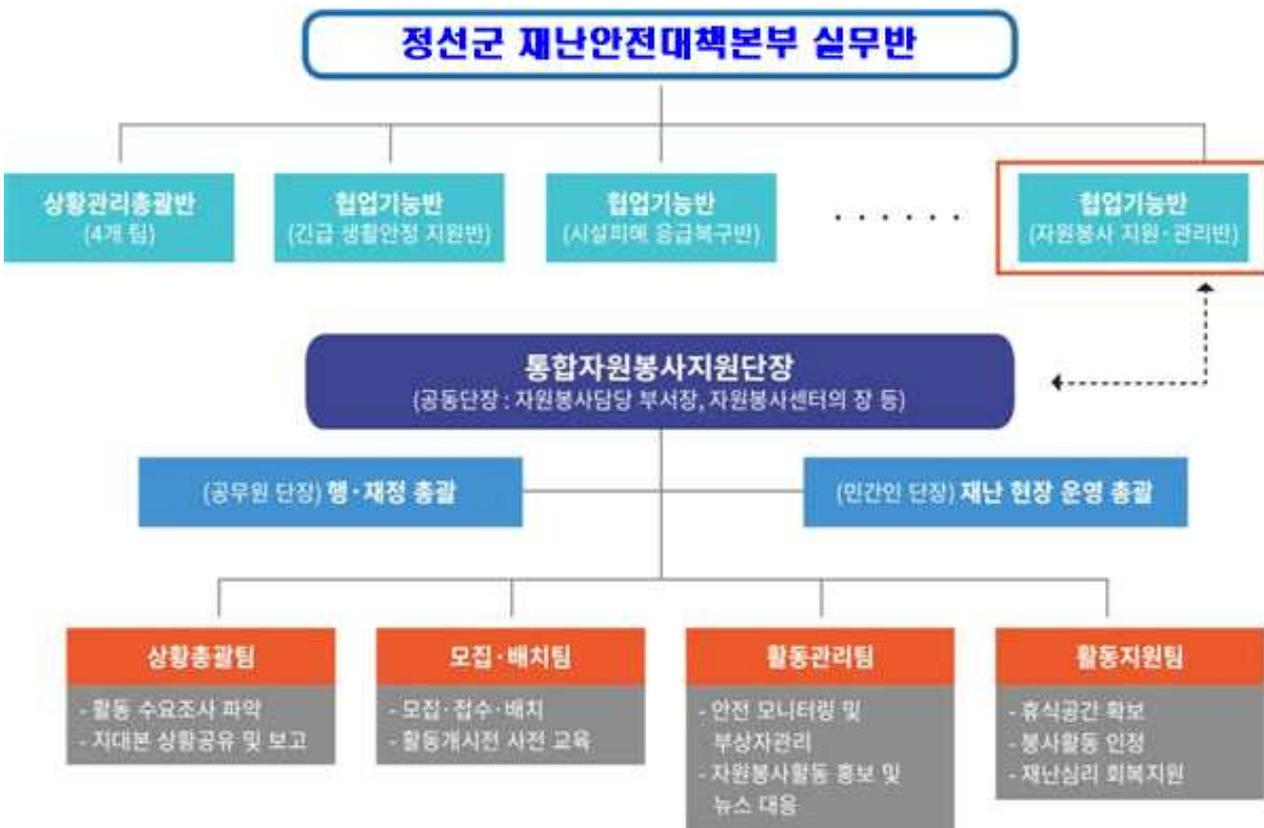
-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 직무분담표 예시 >

팀명	직위	담당 사무
단장	공무원 (정선군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	▶ 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민간인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장)	
상황총괄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정선군 자원봉사업무 담당(계장)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정선군 자원봉사업무 담당자	▶ 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 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모집·배치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동관리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단체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지원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또는 정선군 민간단체 대표	▶ 자원봉사 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비 고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 관 계 법 령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4. "구호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 나.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 다. 그 밖에 구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의2(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 ① 구호기관은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이재민등의 구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4.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설 중 구호기관이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의 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구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기관장 또는 운영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 □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6조(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정선군 공고 제2020-88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4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54-7번지 일원
3. 규 모 : 도로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0. 7. 24. ~ 2020. 8. 00.)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정선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894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시행)」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변경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나.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 전자상품권 발행 근거 규정
- 다.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권면금액 및 상품권 유효기간
- 라.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판매대행점 협약 후 그 사항을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마.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0조)
  - 가맹점 ‘지정’ 에서 ‘등록’ 으로 변경
  - 가맹점 등록이 취소 된 경우, 그 사항을 공개
  - 가맹점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 제한 가능
- 바. 사용자 및 가맹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1조)

- 100분의 60이상 구매 후 환불 요구 가능
- 사. 운영대행사의 위탁, 준수사항, 위탁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 아.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3. 전부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7. 22. ~ 2020. 8. 1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69),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 정선군 조례 제 호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또는 증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 또는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자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개인 및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5. “운영대행사”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업무에 관하여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발행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 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조 따른 전자금융업자
6. “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제, 환전 등의 업무가 정보통신 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전자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2만원권
5. 5만원권

⑤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⑥ 상품권의 명칭, 종류, 권면금액,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인센티브 보전 등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판매대행점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

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정선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상품권 환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결제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④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⑤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시 군수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맹점이 조례, 규칙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의 대금을 청구한 경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맹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에 대해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개별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임을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운영대행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협약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14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발행, 결제, 충전, 환불 등의 자료의 수집, 분석 등을 통한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자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일정한 주기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 작성 및 판매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6조(운영위탁 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대행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위탁 목적에 위배 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운영대행사가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운영대행사가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가 운영위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사유를 문서로써 운영대행사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운영위탁 협약이 해지될 경우 상품권 운영과 관련된 제반의 자료를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연속성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7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구입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5,000원 단위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가맹점 대표자, 단체·법인 등에는 제3항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인센티브 보전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제18조(환수 조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 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포상)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유통질서 확립) ①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판매·환전 수수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보안장치)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

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제6조 및 제1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 가맹점의 등록
3. 가맹점의 등록 취소
4.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판매대행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3.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이 경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895호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7.2.시행)」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7.2.시행)」 제정
- 나. 행정안전부 및 강원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복·충돌 조항을 정리하고자 함
- 다. 정선아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품권 도입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명 변경
  - 당초 : 정선군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변경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나.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가맹점 ‘지정’ 에서 ‘등록’ 으로 변경
- 라. 구매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상품권의 환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기본 환전한도 가맹점별 월 1천만원 이내
  - 환전한도액 초과신청 가능
- 바. 상품권 활성화 지원 및 훼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기간을 정하여 1인당 구매한도 100만원 이내, 구입금액 10% 이내 인센티브 지급 가능

3. 전부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7. 22. ~ 2020. 8. 11.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경제과

- 연락처 : 전화(033-560-2969), 팩스(033-560-2594)
- 주 소 : (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 정선군 규칙 제 호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자상품권”이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협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가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수불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량, 회수량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 등록 현황을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할 때에 결제방법은 개인의 경우 현금만 가능하고, 법인·단체 등은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 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 등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구매로 대신한다.

③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지원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는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으로 정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인센티브 보전 및 판매·환전 등 수수료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상품권의 환전 등) ① 가맹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환전하는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기본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전한도액을 승인할 수 있으며, 최대 5천만원까지 승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당월 및 익월 또는 기업체, 관공서 등이 대량으로 거래할 때에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5천만원 이내에서 2배까지 상향 승인할 수 있다.

⑤ 전자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 잔액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관리와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실물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보관기관이 경과된 실물 상품권 및 복사본은 군수에게 요청하여 담당 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 이내

로 확대할 수 있으며, 구입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가맹점 대표자 및 단체·법인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상품권의 훼손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교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상품권을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에 따른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상품권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실물 또는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제11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 지정은 상품권 소관 부서의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담당공무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운영현황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

권면금액	발행번호	매 수	발행금액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 계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 수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수불부 ※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일자	판매(A)			회수(B)		훼손·불량(C)		유통 잔량 (A-B+C)
	구분	판매금액	매수	구분	매수	구분	매수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신규·변경) 신청서

신청인	① 사업자 등록번호		⑤ 업 종	
	② 상호명 (법인명)		⑥ 전화번호 (사업장)	
			⑦ 연 락 처 (휴대폰번호)	
	③ 대표자		⑧ 생년월일	
④ 사업장 소재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서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규·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li> <li>2.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3. 신분증 사본</li> <li>4. 시장상인회 확인서(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의 경우)</li> </ol>
------	--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정선군이 발행하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선군과 가맹점 간 협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변경·해지)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②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취소) 정선군수는 가맹점이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상품권 취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상품권 취급제한)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정선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권
2. 위조·변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제6조(배상책임)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나 조례 제10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가맹점 책임으로 한다.

제7조(가맹점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환전청구 및 결제) ① 가맹점이 사용된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가맹점이 청구한 상품권의 환전은 판매대행점의 확인 및 입금의뢰 절차를 거쳐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의 등록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 및 업무협조) ① 정선군수와 가맹점은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품권 교환업무의 처리는 정선군수와 가맹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정선군수와 가맹점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p>정선군</p> <p>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p> <p>대표자 : 정선군수 (서명 또는 날인)</p>	<p>가맹점</p> <p>상 호 :</p> <p>주 소 :</p> <p>대표자 : (서명 또는인)</p>
--	--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			
상 호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p>「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귀 업소를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p>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영업장소재지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선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확인서
------	------------------------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구매 신청서

구 분	성 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 매 금 액		
개 인 법 인 단 체				금 _____ 원		
권 중 선 택	권 중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매 수	매	매	매	매	매

※ 첨부서류

- 개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수집 · 이용 · 제공 목적 : 개인정보는 정선아리랑상품권의 판매, 인센티브, 구매한도 및 유통관리,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분석을 위해 수집 · 이용 · 제공됩니다.  
- 수집 · 이용 · 제공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①항 제①호 및 제②항, 제17조 제①항 제①호 및 제②항
2. 수집·이용·제공 항목 및 이용·보유기간 :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매금액이며, 구매시점 부터 5년간 보관됩니다.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정선아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는 상품권 구매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품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 제공 목적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정선아리랑상품권 구매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정선아리랑상품권의 구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 청구서

■ 환전 청구 수량 및 금액			
상품권 종류	매 수	금 액	비 고
5만원권			
2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1천원권			
계			

상 호 명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날인)

※ 환전결재 : 영업일 3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 입금됩니다.  
 ※ 첨부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정선아리랑상품권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신규(변경)등록			

※ 계좌번호 신규(변경)등록 시 반드시 본인 방문, 자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가맹점 환전 관리  
 - 수집·이용·제공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①항 제1호 및 제②항, 제17조 제①항 제1호 및 제②항
2.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환전금액
3.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는 최종 환전일 부터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4.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등 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동이는 상품권 환전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 하셔야만 환전이 가능 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품권 환전 관리를 위해  예  
 위와 같이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니오

성명(대표자명) : \_\_\_\_\_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액 초과신청서			처리기한 14일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인적사항			
상 호 명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형태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input type="checkbox"/> 한도 초과 요청			
상품권 환전요청액(최대 50,000천원)		천원	
월평균 매출액(※최근 3개월)		천원	
<input type="checkbox"/> 한도 초과 사유(간략하게 작성)			
-  <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div>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 업소의 평균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매출금액 증빙서류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주의사항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권 관련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후 최장 5년까지 보관 및 처리될 수 있음 ② 위 기재 항목에 대해 고의로 누락이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권면금액	매 수	폐기방법	비 고
계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담당공무원) : 직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정선군수 귀하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대장 ※종이상품권만 해당

(단위: 매, 천원)

인수일	발행번호		발행 매수	발행금액	보관 장소	결재		
						주무관	담 당	과 장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2만원권							
	5만원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정선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품권 판매·환전 수수료, 인센티브 보전 등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판매대행점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정선군에 소재한 업소 중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정선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상품권 환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운영대행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운영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로 지정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협약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17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구입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5,000원 단위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가맹점 대표자, 단체·법인 등에는 제3항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 ⑥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인센티브 보전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군수가 보전할 수 있다.

정선군 공고 제2020-905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지급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복지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확대 및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
-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지급안 마련
  -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안 마련(안 제6조의2)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
  -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 마련(안 제16조)
- 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기준 확대
  - 복지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감면 기준을 마련(안 제19조)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안 제8조의2, 안 제9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7. 27. ~ 2020. 8. 18.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59),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영 제2조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톤당 11,670원씩 징수할 수 있다.”를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7과 같이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폐기물관리법」</u> (이하 “법”이라 한다), <u>동법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및 <u>동법시행규칙</u>(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가정쓰레기”라 함은 <u>법 제2조 제2호</u>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p> <p>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u>법 제2조제3호</u> 및 <u>영 제2조의</u>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p>	<p><u>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폐기물관리법」</u>,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u>시행에</u> ---- ----- -----.</p> <p>제2조(정의) ----- -----.</p> <p>1. ----- <u>「폐기물관리법」</u> (이하 “법”이라 한다) <u>제2조제2호</u> ----- ----- ----- -----.</p> <p>2. ----- ----- <u>같은 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u>제2조의</u> ----- ----- -----</p>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 7. (생 략)

<신 설>

<신 설>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검사한 결과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신 설>

-----.  
-----  
-----  
-----.

3. ~ 7. (현행과 같음)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략)

②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일반관리지역과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②. (생략)

③폐기물배출자(다량배출자)가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코자 할 경우는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톤당 11,670원씩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6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②. (생략)

③-----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표7과 같이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생략)

②. (생략)

항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

2. (생략)

②. (생략)

##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8조 및 제16조관련)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가전 제품	냉장고	1000ℓ 이상	20,000
		500ℓ 이상	10,000
		300ℓ 이상	7,000
		300ℓ 미만	5,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29인치이상	7,000
		25인치이상	6,000
		12인치이상	5,000
		12인치미만	3,000
	세탁기	모든규격	5,000
	탈수기	모든규격	3,000
	에어컨	264㎡형이상	10,000
		66㎡형이상	7,000
		66㎡형미만	5,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4,000
	전자렌지	모든규격	4,000
	가스렌지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모든규격	3,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4,000
	진공청소기	모든규격	3,000
	가습기	모든규격	3,000
	팩스기(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전축	높이1m이상	7,000
		높이1m미만	5,000
	컴퓨터	본체	3,000
		모니터	3,000
		프린터	3,000
		키보드	1,000
스피커	모든규격	2,000	
난로	석유난로	4,000	
	전기스토브	2,000	
전기밥솥(통)	모든규격	2,000	
선풍기	업소용(대형)	5,000	
	가정용(일반형)	3,000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가구	장롱, 장롱	120cm장1쪽	20,000
		90cm장1쪽	15,000
	소파	대형6인용	8,000
		소형4인용	6,000
		소형3인용	5,000
		2인용	4,000
		1인용(1인용당)	3,000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식탁	6인용이상	7,000
		6인용미만	5,000
	침대(매트리스포함)	2인용이상	10,000
		1인용	6,000
	싱크대	높이90cm이상	7,000
		높이90cm미만	5,000
	매트리스	대형	10,000
		2인용	8,000
		1인용	5,0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의자	2인용이상	4,000
		1인용	2,000
	장식장(책장)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5,000
	화장대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4,000
	문갑	1쪽	4,000
	서랍장	5단이상	5,000
		5단미만	4,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4,000	
캐비닛	4단이상	8,000	
	4단미만	5,000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생활 용품	페타이어	대형(size20이상)	7,000
		중형(size16~19)	5,000
		소형(size15까지)	3,000
	보일러(통)	대형	10,000
		중형	7,000
		소형	4,000
	변기	모든규격	6,000
	욕조	모든규격	7,000
	세면대	모든규격	5,000
	피아노	그랜드	30,000
		어프라이트	20,000
	쌀통	80kg이상	5,000
		80kg미만	4,000
	오르간	모든규격	10,000
	장판	모든규격	4,000
	자전거	성인용(두발)	4,500
		아동용(두발)	4,000
		아동용(세발)	3,500
	수족관	길이1m이상	5,000
		길이1m미만	3,000
	카펫	모든규격	4,000
	유모차	모든규격	3,000
	보행기	모든규격	3,000
	자판기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7,000
	벽시계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대자리	모든규격	2,000
	빨래건조대	모든규격	2,000
	상, 밥상	6인이상	3,000
		6인미만	2,000
	간판	60cm×180cm이상	10,000
60cm×180cm미만		6,000	
게임기 (오락기)	높이1m이상	10,000	
	높이1m미만	6,000	

구분	품명	규격	수수료(원)
기타	기타가전제품 및사무용제품	대형	7,000
		중형	5,000
		소형	3,000
	기타봉투에 넣기 어려운것	쌀마대(80kg)1개	4,000
		쌀마대(60kg)1개	3,000
		쌀마대(40kg)1개	2,000
	폐소화기류	10kg초과	7,000
		10kg이하	5,000
		3.3kg이하	3,000

## [별표 6]

##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6조 관련)

최종판매가격 :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 비용은 제외
-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효율은 9%(특수규격봉투의 경우 상향된 효율을 적용할 수 있음)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효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
- 판매수수료: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 \times \text{판매수수료 효율} \div (1 - \text{판매수수료 효율})\}$ 로 산정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ell \text{ 당 처리비용} \times \text{봉투용량}(\ell) + \text{봉투제작비}) \times \text{주민부담률(목표치)} + \text{판매수수료}$ 로 산정하되 10원단위로 절상조정

## 《 쓰레기봉투 가격 》

(단위 : 원/매)

용량별	봉투판매소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봉투판매가	비 고
2ℓ	64	6	70	
3ℓ	73	7	80	
5ℓ	101	9	110	
10ℓ	202	18	220	
20ℓ	385	35	420	
30ℓ	587	53	640	
50ℓ	963	87	1,050	
75ℓ	1,431	129	1,560	
100ℓ	1,899	171	2,070	

[별표 7]

반입수수료(제16조 관련)

(단위: 원)

적용대상 폐기물	단위	수수료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톤	47,250원

## [별표 8]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⑥ (생략)

##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 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 제5항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2. 6. 1., 2013. 7. 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

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5. 1. 20., 2020. 5. 26.>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 7. 23., 2013. 7. 16., 2014. 1. 21., 2019. 11. 26.>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1의3.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의4.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의5.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1의6.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의7.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제25조 제9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2.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3의3. 제25조의2 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6의2.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0. 7. 23.>

8.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3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10. 제46조 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1의3. 제17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7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5. 7. 20.>
4. 삭제 <2010. 7. 23.>
5. 제17조 제2항, 제25조 제11항, 제29조 제3항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6.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07. 8. 3.>
9.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9의3.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9의4. 제3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 제40조 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1. 제46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2.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12의2.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2의3.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4.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5.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6.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7의2.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 8.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38조 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0.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11. 제39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 제40조 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3. 제40조 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2. 30.>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보장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12. 2. 1.]

정선군 공고 제2020-905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이 필요함
-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명 변경
  -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시행규칙명 변경
- 봉투판매소 관련 민원서류 간소화 마련
  - 봉투판매소 지정·변경승인·관리대행 지정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행정 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한 서류 목록 삭제(안 제3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항목을 신청서 서식에 추가(안 별지 제2호, 제4호 서식)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규정 마련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환불 규정 마련 (안 제6조제4항)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 작성 규정 마련(안 제 6조 제3항 및 제4항)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7. 27. ~ 2020. 8. 18.

##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59),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을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를 “의 시행에” 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를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개시 희망 일 15일전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을 “별지 제2호 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0-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구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10-2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0-3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0-1호서식부터 별지 제10-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u> <u>시행규칙</u></p>	<p><u>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u> <u>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의 시행에 ----- -----.</p>
<p>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u>조례</u>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6. (생 략)</p> <p>② (생 략)</p>	<p>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정선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① (생 략)</p> <p>②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u>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개시 희망일 15일전에 신청서(별지 제2호</u></p>	<p>제3조(쓰레기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지 제2호 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u>을 -----</p>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용 봉투판매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쓰레기봉투판매 예정지의 약도 1부

③ ~ ⑤ (생략)

제6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①·② (생략)

③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

<삭제>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0-1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환불받으려는 사람은 구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별지 제10-2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을 작성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별지 제10-3호

	<p><u>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 (변경)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적고 20일 이내에 환불한다.</u></p>
--	--

[별지 제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처리기한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전화번호	
판 매 소 위 치				
판매인 구분 (주요 취급품목)				
판매소와 인근주요 시설물과의 위치		에서	방향으로	m에 위치
<p>「정선군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p>				
정선군수    귀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b>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b>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 10-2 서식]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취소(변경)신고서

배출신고일자		취소(변경)사유			처리기간 20일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취소(변경) 내역	폐기물명	규격	수량	기 납부수수료	환불산정액	비고
				원	원	
				원	원	
				원	원	
	합계			원	원	
환불내역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p>「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에 대한 취소(변경)신고를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0px;">신고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100px;">읍·면장 귀하</p>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⑥ (생략)

##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정선군 공고 제2020-906호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로 최초 결정된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6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사업
- 2) 명 칭 : 정선(임계) 군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변경)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m <sup>2</sup> )	금회 시행	
공원	임계3 어린이공원	2,4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계3 어린이공원 변경 조성 A=2,441.0m<sup>2</sup></li> <li>- 편익시설 18.0m<sup>2</sup>    - 유희시설 322.0m<sup>2</sup></li> <li>- 운동시설 150.0m<sup>2</sup>   - 기반시설 893.0m<sup>2</sup></li> <li>- 녹지 및 기타 1,058.0m<sup>2</sup></li> </ul>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0. 7. 31~2020. 8. 14.)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464)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임계면 송계리	280-30	구거	124.0	124.0	-	농림축산 식품부	-	-	-
2	임계면 송계리	497-2	도로	5.0	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3	임계면 송계리	640-50	도로	90.0	90.0	봉양3길 21	정선군	-	-	-
4	임계면 송계리	679	답	446.0	122.2	봉양3길 21	정선군	-	-	-
5	임계면 송계리	683-2	공원	13.0	13.0	봉양3길 21	정선군	-	-	-
6	임계면 송계리	686-1	답	455.0	300.0	봉양3길 21	정선군	-	-	-
7	임계면 송계리	689-1	공원	285.0	2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8	임계면 송계리	691-1	공원	685.0	685.0	봉양3길 21	정선군	-	-	-
9	임계면 송계리	692-2	공원	772.0	770.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0	임계면 송계리	692-3	답	174.0	1.9	봉양3길 21	정선군	-	-	-
11	임계면 송계리	696-3	공원	44.0	44.0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1필지		3,093.0	2,441.0					